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62~62p	오타	① <u>특수경비원</u>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제14조 제8항의 규정 및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<u>무기의 안전수칙</u>을 위반하여 형법 제258조의2(특수상해죄) 제1항(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한정한다)·제2항(제258조 제1항·제2항의 중상해죄로 한정한다), 제259조 제1항(상해치사죄), 제260조 제1항(<u>폭행죄</u>), 제262조(폭행치사상죄), 제268조(업무상과실·중과실치사상죄), 제276조 제1항(체포 또는 감금죄), 제277조 제1항(중체포 또는 <u>감금죄</u>), 제281조 제1항(체포·감금등의 치사상죄), 제283조 제1항(협박죄), 제324조 제2항(특수강요죄), 제350조의2(특수공갈죄) 및 제366조(재물손괴등)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.	① <u>특수경비원</u>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제14조 제8항의 규정 및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<u>무기의 안전수칙</u>을 위반하여 형법 제258조의2(특수상해죄) 제1항(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한정한다)·제2항(제258조 제1항·제2항의 중상해죄로 한정한다), 제259조 제1항(상해치사죄), 제260조 제1항(<u>폭행죄</u>), 제262조(폭행치사상죄), 제268조(업무상과실·중과실치사상죄), 제276조 제1항(체포 또는 감금죄), 제277조 제1항(중체포 또는 <u>중감금죄</u>), 제281조 제1항(체포·감금등의 치사상죄), 제283조 제1항(협박죄), 제324조 제2항(특수강요죄), 제350조의2(특수공갈죄) 및 제366조(재물손괴등)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.
102~102p	오타	경비업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청장, 시·도 경찰청장의 <u>명령</u>을 위반한 때 행정처분 기준은 2차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3월, 3차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9월이다. (X) 기출 24	경비업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청장, 시·도 경찰청장의 <u>명령</u>을 위반한 때 행정처분 기준은 2차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3월, 3차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9월이다. (X) 기출 24
139~139p	오타	제24조의3 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 ★★ ① <u>경비업자</u>는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인적사항, 배치일시, 배치장소, <u>배차폐지일시</u> 및 근무여부 등 근무상황을 기록한 <u>근무상황 기록부</u>(전자문서로 된 근무상황 기록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 주된 <u>사무소</u> 및 <u>출장소</u>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	제24조의3 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 ★★ ① <u>경비업자</u>는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인적사항, 배치일시, 배치장소, <u>배차폐지일시</u> 및 근무여부 등 근무상황을 기록한 <u>근무상황 기록부</u>(전자문서로 된 근무상황 기록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 주된 <u>사무소</u> 및 <u>출장소</u>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146~146p	개념, 공식-설명	[헌법불합치, 2020헌마1181, 2022.11.24., 국가공무원법(2018.10.16.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)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(2017.10.24.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) 제17조 제2호 가운데 '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'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. 위 법률조항들은 2024.5.31.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.] [헌법불합치, 2020헌마1605, 2022헌마1276(병합), 2023.6.29., 국가공무원법(2018.10.16.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)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2014.1.21.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, 2020.6.2.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5항 가운데 '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'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(2018.10.16.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)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2014.1.21.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, 2020.6.2.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5항 가운데 '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'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. 위 법률조항들은 2024.5.31.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.] ※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2024.12.31. 개정 시 "[2024.12.31. 법률 제20621호에 의하여 2023.6.29.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의4를 개정함.]"이라고 기재하고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음	[2024.12.31.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.11.24.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.]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210~211p	개념, 공식-설명	[헌법불합치, 2020헌마1181, 2022.11.24., 국가공무원법(2018.10.16.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)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(2017.10.24.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) 제17조 제2호 가운데 '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'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. 위 법률조항들은 2024.5.31.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.] [헌법불합치, 2020헌마1605, 2022헌마1276(병합), 2023.6.29., 국가공무원법(2018.10.16.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)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2014.1.21.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, 2020.6.2.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5항 가운데 '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'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(2018.10.16.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)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2014.1.21.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, 2020.6.2.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5항 가운데 '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'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. 위 법률조항들은 2024.5.31.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.] ※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2024.12.31. 개정 시 "[2024.12.31. 법률 제20621호에 의하여 2023.6.29.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의4를 개정함.]"이라고 기재하고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음	[2024.12.31.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.11.24.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.]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